

임신

1 난임치료휴가
유급



2 태아검진
시간허용 유급



3 유산·사산휴가
정부지원



4 임신기근로시간
단축 유급



5 임신근로자
출퇴근시간 변경



임신·출산·육아기

일하면서
아이키우기



사업주와 근로자를
지원합니다



임신·출산·육아기

주요 모성보호제도
12가지



출산

6 출산전후휴가
유급·정부지원



7 배우자출산휴가
유급·정부지원



육아

8 육아휴직
정부지급



9 육아기근로시간
단축 정부지급



10 수유시간
유급



11 가족돌봄휴가
무급



12 가족돌봄휴직
무급



신청방법

고객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 • 고용센터 방문 및 우편 신청 • 고용보험 앱



고용24 홈페이지 www.work24.go.kr



사업주 지원

알하면서 아이키우기 사업주와 근로자를 지원합니다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허용해야 하지만 인력 공백이 너무 큼니다.



업무공백을 해소하려고 대체인력을 구하려고 하는데 어디서 알아봐야 하나요?

인건비 지원을 통해 인력공백 부담을 덜어드립니다.



대체인력뱅크를 통해 대체인력 채용을 도와드립니다.



육아휴직 지원금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사용한 근로자를 육아휴직 종료 후 6개월 이상 계속 고용하면 월 30만원을 중소기업 사업주에게 지원합니다.

근로자에게 연속하여 3개월 이상의 휴직(만 12개월 이내 자녀 대상)을 허용한 경우는 첫 3개월 동안 매월 200만원 지급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사용한 근로자를 근로시간 단축 종료 후 6개월 이상 계속 고용하면 월 30만원을 중소기업 사업주에게 지원합니다.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처음 허용한 사업장의 경우 세번째 허용사례 까지 월 10만원을 추가 지원(월 40만원)

대체인력 지원금

근로자가 출산휴가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사용하는 경우 해당기간 대체인력을 30일 이상 계속 고용하고, 해당근로자 복귀 후 1개월 이상 계속 고용하면 월 80만원을 중소기업 사업주에게 지급합니다.

최대 2개월의 인수인계기간에는 월 120만원 지원

'24년 신설 검토 중인 제도

육아기 단축 업무분담 지원금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근로자의 업무를 분담하는 동료 직원에게 사업주가 일정한 보상을 지급하는 경우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대체인력 채용 지원

권역별 대체인력뱅크*를 통해 대체인력 채용을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24년부터 인재채움뱅크로 명칭 변경



대체인력
뱅크통합

matchingbank.career.co.kr | 🔍

(2023년 기준)

대체인력뱅크 운영기관

- ▶ 수도권 대체인력뱅크 (주)커리어넷 1577-0221
- ▶ 지방권 대체인력뱅크 (주)스카우트 1577-8505
스텝스(주) 1522-4231

신청방법

- ▶ 고객센터 (국번없이) 1350
- ▶ 고용센터 방문 및 우편 신청
- ▶ 고용보험 앱
- ▶ 고용24 홈페이지 www.work24.go.kr



2024년 확대·신설 추진 중인 제도

6+6 부모육아휴직제

'24.1.1 시행 잠정

자녀 생후 18개월 내 부모 모두 육아휴직 사용 시, 첫 6개월에 대해 정부가 지급하는 육아휴직급여를 상향(통상임금 80%→100%)

육아휴직

'24년 하반기 시행 잠정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사용한 경우 사용기간 6개월을 추가 부여하고, 연장된 기간에 대하여 육아휴직급여 지급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24년 하반기 시행 잠정

자녀연령(8→12세) 및 사용기간(최대 24→36개월) 확대, 정부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급여 확대(주 5→10시간)

육아기 단축 업무분담 지원금

세부내용은 추후 별도 안내

'24년 하반기 시행 잠정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근로자의 업무를 분담하는 동료 직원에게 사업주가 일정한 보상을 지급하는 경우 지원금을 신설 지급

배우자출산휴가

'24년 하반기 시행 잠정

휴가 사용 분할 횟수 확대(1회→3회), 정부급여 지원 확대(5일→10일), 다둥이 출산시 휴가 기간 확대(10일→15일)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24년 하반기 시행 잠정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서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로 확대 추진

난임치료휴가

'24년 하반기 시행 잠정

난임치료휴가 기간 확대(3일(유급1일)→6일(유급2일)), 중소기업 근로자에 대한 난임 치료 휴가 급여

직장어린이집

'24.1.1 시행 잠정

중소기업 직장어린이집 임차비 지원 신설